

「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(수시-4차)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○ (가칭)첨단방위산업진흥센터 신축

지역의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해 방산시험이 가능한 시험장비 구축 및 사업화, 창업,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 등을 위한 공간 마련을 위한 센터를 신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【취득재산】

○ 위 치 : 구미시 공단동 267-96번지

○ 대 상 : 토지 3,814㎡, 연면적 4,000㎡

* 시험동 2개동(지상1층 신축), 사무동(지상1~3층, 신축)

○ 사 업 비 : 14,000백만원

• 사업비 산출내역 : 설계비, 감리비, 시설부대비 포함 건축비

○ 사업기간 : 2023년 ~ 2024년

○ 주요시설 : 시험동 및 사무동 (3개동)

건물별	층별	면적(㎡)	주요시설	비 고
계		4,000		
시험동 2개동	지상 1층	2,500	환경/신뢰성시험, EMC	신축
사무동 1개동	지상 1~3층	1,500	사무실, 회의실 등	신축

4. 근거법령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, 같은법 시행령 제38조

○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의2, 같은법 시행령 제7조

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

회계명 : 일반회계

(단위 : m², 백만원)

구 분		건수	수량	금액
취득	계	1건	4,000	14,000
	1. 매입	토지 건물 기타		
	2. 교환 으로 취득	토지 건물 기타		
	3. 기타 취득	토지 건물 기타	1건 4,000	14,000

취득 및 처분 재산목록(총괄)

회계명 : 일반회계

(단위 : m², 백만원)

구분	재 산 의 표 시			추정가액	취득시기	사 유	재산 소유자	비고
	재산구분	소 재 지	수량(m ²)					
계			4,000	14,000				
취득	건물	공단동 267-96	4,000	14,000	2023년	첨단방위산업 진흥센터 신축	구미시	신축

위 치 도

□ (가칭)첨단방위산업진흥센터 신축

○ 소재지 : 구미시 공단동 267-96



5. 검토의견

○ 본 관리계획안은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, 같은법 시행령 제38조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 시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, 2023년도 공유재산 수시 4차 관리계획 대상은 「첨단방위산업진흥센터 신축」 1건임.

○ 「첨단방위산업진흥센터 신축」은

- 지역의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해 방산시험이 가능한 시험장비 구축 및 사업화, 창업,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 등을 위한 공간 마련을 1산단 중심 구미국가산업단지의 시소유 토지에 건물을 새로 건축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유무인복합체계 사업화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, 구미시 방산중소업체의 수요를 감안한 장비 구축은 필요한 것으로 보임.